DB손해보험

천만 고객과의 약속

보험금 청구서

1. 보험계약사항

보 험 종 목		증 권 번 호	
보험 계약자		보험가입금액	

2. 다른 보험회사 계약사항 (있음□ 없음□)

보 험 회 사		보험가입금액	

(금번 사고와 관련한 모든 보험계약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실 경우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실 수 있습니다.)

3. 사고개요

사 고 일 시		사고원인	
사 고 장 소		피 해 품	
사 고 경 위 (6하 원칙으로 상세기재)			

청구자 본인은 상기 내용에 사실과 다른 것이 있거나 관련서류 또는 증거가 위조, 변조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이며, 만일 보험약관 또는 제규정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일체를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보험금 청구인 성 명 : (인) / e-mail : (피보험자와의 관계 :)

주 소 : (연락처 :)

☞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내, 용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정도를 과장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금지된 범죄입니다."

☞ "보험사기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보 험가입제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 수령 위임

위 사고에 따른 보험금의 수령권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나 이용 및 제공 동의에 관한 일체의 권리, 기타 위 사고와 관련된 보험계약상의 권리 일체를 위임 받는 분에게 위임하며, 향후 이와 관련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그 증거로서 본 위임내용에 날인(인감도장)하여 제출합니다.

위임 하는 분	(인)	주민번호 : -	(Tel:)
위임 받는 분	(인)	주민번호 : -	(Tel:)

5. 질권기관 담당자

질권기관명		부/지점		과 / 계	
직 위		성 명		연 락 처	

※ 보상진행 및 처리결과는 휴대폰문자(SMS)로 안내되며, 기타방법(E-mail, FAX, 우편)으로 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항목 중 하나에 (V)표시 바랍니다.
안내방법 : E-mail □ FAX □ 우편 □ 불필요 □

절 취 선

DB손해보험주식회사 귀중

온 라 인 송 금 요 청 서

계 좌 번 호		은 행 명	
예금주(상호)		주민(사업자)번호	

◆ 위 통보내용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계좌로의 송금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이 일체의 책임을 지겠으며 귀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

요청일 20 년 월 일 요청인 성명(상호) (인)

※ 송금 받으실 보험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DB손해보험

천만 고객과의 약속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청구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확인서 제출)

※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별도 연락을 드립니다.

※ 안내된 서류 이외에도 추가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사고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3. 보험금 지급지연

※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 보험금 청구절차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서면 혹은 유선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4. 가지급 보험금 제도

※ 보상하는 사고의 손해사정이 늦어지는 경우 청구권자의 요청에 의해 추정지급보험금의 50%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5.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현장조사, 병원방문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 받은 업체

- 손해사정사 선임 시 비용 부담주체

※ 보험계약자 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의미함

※ 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5조(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운영 등)의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 동의 거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전문보험계약자의 계약. 다만, 실손의료보험계약을 포함하는 단체보험상품 및 여행보험상품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보험업법시행령 제1조의 제3항 각 호에 따른 보험계약

(1.화재보험계약 2.해상보험계약(항공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3.자동차보험계약 4.보증보험계약 5.재보험계약 6.책임보험계약 7.기술보험계약 8.권리보험계약 9.도난보험계약 10.유리보험계약 11.동물보험계약 12.원자력보험계약 13비.용보험계약 14.날씨보험계약)

6. 비례보상 및 중복보험 안내

※ 보험종목 및 특약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은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둘 이상의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중복보험 처리규정에 따라 보상됩니다.

7.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189조)

단, 보험사고로 인해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4항)

8.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접수시 통보하여 주신 연락처(e-mail 또는 SMS)로 보험금 지급안내문이 발송됩니다.
DB손해보험 홈페이지(www.idbins.com)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과정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재심사 청구

※ DB손해보험의 보험금 不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DB손해보험 소비자보호파트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www.idbins.com, 고객센터)에 접속하여 신청
우 편 접 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11층 소비자보호파트
전 화 상 담 : 1588-0100

절 취 선

보험금 지급절차

0619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대표번호 : 1588-0100 / www.idbins.com

사고발생 통보 (접수) → 청구서류안내 / 현장조사 → 손해액 사정 / 보험금 지급검토 → 보험금 결정 및 지급 → 보험급 지급안내

※ 사고접수가 완료되면 SMS를 통해 사고접수 및 보상담당자 성명과 연락처가 통보됩니다.
※ 보험금 지급, 보상처리 종결시 SMS 및 제공하신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 보험금 지급내역이 통보됩니다.

DB손해보험 **[필수]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천만 고객과의 약속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고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구상관련 업무, 손해사정 또는 의료자문 포함)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및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금융거래 관련 업무 ○ 자동차과실 비율분쟁 심의업무(자동차보험에 한함)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단,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 및 별도 보관)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①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③채권·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 "을 말한다.

▪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등), 보험사고 조사 (보험 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를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 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 성별,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 국내거소신고번호, 소득증빙자료, 음성정보, 운전면허정보,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차량등록증상의 정보	
신용거래정보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보험요율산출기관 : 보험개발원 ○ 보험회사 등 : 손해보험회사, 국내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 금융거래기관 :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보험협회 : 생명·손해보험협회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공공기관, 법령상 업무 수행 기관(위탁사업자 포함) ○ 계약관계자 :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자, 보험계약자 등 ○ 업무수탁자 등 : 보험금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 업무를 위탁받은 자(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의료기관·의사, 변호사, 위탁 콜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분쟁심의회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개인(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교통사고처리내역발급간소화 서비스 ○ 보험요율산출기관 : 보험요율산출 ○ 보험회사 등 :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재보험금청구, 보험사고조사(보험사고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업무, 보험금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 진료비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 구상금분쟁심의업무 ○ 금융거래기관 :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보험협회 :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업무지원 ○ 공공기관 등 : 보험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보험에 한함), 도로교통 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포함) ○ 계약관계자 : 손해사정 내용 관련 정보 제공 ○ 업무수탁자 등 : 보험금 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 관련 위탁업무 수행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이 재보험금 청구 등 지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외국소재본점에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기왕증 등), 보험사고 조사 (보험 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를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 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위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 국내거소신고번호, 소득증빙자료, 음성정보, 운전면허정보,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차량등록증상의 정보	
신용거래정보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2-1. 국외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1개)	○ 국외 재보험사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재보험금 지급·심사, 법률 및 국제협약 등의 의무이행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관련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다음장에 계속 ▶

▪ 제공 항목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연령, 성별,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	
신용거래정보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등), 보험금정보(사고정보, 지급금액 등)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3.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국토교통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 교통사고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 생명·손해보험협회 : 보험금 지급·심사(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등) ○ **보험요율산출기관·국토교통부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 법령에 의한 업무수행 등**
조회동의와 효력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 (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함.)

▪ 조회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기왕증 등), 경찰청이 보유한 교통사고조사기록(보험요율산출기관을 통한 조회)**	
	위 민감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 국내거소신고번호, 소득증빙자료, 음성정보, 운전면허정보,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차량등록증상의 정보	
신용거래정보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DB손해보험주식회사

20 년 월 일

본 인 : (인)

법정대리인 : (인)

※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친권자가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